

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제 안 경 위

가. 발 의 자: 김정 의원 외 12명

나. 의안번호: 제2586호

다. 발의일자: 2025. 3. 31.

라. 회부일자: 2025. 4. 2.

2. 제 안 사 유

- 「환경영향평가법」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개발제한구역 등 보전이 필요한 용도지역에서 실시되는 일정 규모의 개발사업(9개 분야 21개 지역, 5천 m^2 ~평가대상 규모 미만)으로 환경청에서 실시하며, 동법 제42조에 따른 시·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(이하 “조례 환경영향평가”)는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각종 개발사업(지자체별 상이)으로 시·도에서 실시함.
- 소규모 환경영향평가(정비사업 부지면적 6만 m^2 이상)와 조례 환경영향평가(서울시 정비사업 부지면적 9만~30만 m^2 , 건축물 연면적 10만 m^2 이상) 대상 사업이 일부 중복되는 경우가 있어 사업자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있음.
즉, 중대형 사업장이 오히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거나 소형 사업장이 조례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.
- 상위법령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중 민간사업이 조례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과 중복되는 경우 조례 환경영향평가를 우선 실시할 수 있도록 개선됨에 따라, 개발사업으로 인한 환경 영향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상위법령인 「환경영향평가법」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일관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.

3. 주 요 내 용

가.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민간사업 대상 사업 규정 신설(안 제4조제2항).

4. 참 고 사 항

가. 관계법령: 「환경영향평가법」 및 동법 시행령

나. 예산조치: 해당사항 없음

다. 기 타: 신·구조문 대비표

5. 검토 의견

가. 개요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민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 시·도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(이하 “조례 환경영향평가”)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하는 것임.

나. 검토의견

- 현행 「환경영향평가법」 개정 전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 조례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이 중복되는 경우 공공과 민간사업 구분 없이 조례 환경영향평가를 생략하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만을 시행¹⁾하였음.

그러나 법 개정('25.2.21. 시행) 후에는 민간사업에 한하여 조례 환경영향평가를 시행²⁾하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는 평가서 작성 및 협의요청을 생략³⁾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- 안 제4조제2항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 조례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중복되는 민간사업의 경우,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이견 없으며,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절차에서 빠져 있는 평가서 초안 공고·공람, 주민설명회·공청회 등 주민 의견 수렴 절차와 사후환경영향 조사 등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제도 운용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임.

1) 「환경영향평가법」 제42조(시·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) ① (생략) 다만,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개정 '11.7.21.>

2) 「환경영향평가법」 제42조(시·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) ① (생략)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개정 '24.2.20.>

1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

2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

3.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공기업

3) 제44조(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요청 등) ① ~ ② (생략)

③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 및 승인기관장등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하여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시·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요청을 생략할 수 있다.